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및 세분화로 실효성 높이는 도시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2025.6.5.

대구광역시 건축과 건축정책팀
2025.6.19.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실효성·편의성 강화

세종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기업하기 좋은 친환경도시 조성 및 인허가 절차 실효성 제고'라는 목표 아래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관련 기준을 세분화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전체적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등급별로 각각의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부문에서도 에너지 성능별로 세분화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 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던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여 명시하였다. 건물의 취득세 감면 비율을 등급별로 분류하였으며, 개정한 기준으로도 평가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부칙으로 마련하였다.

시는 녹색건축물과 ZEB 인증 기준을 세분화하여 등록 기준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는 강화하여 기업 유치 및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대구시, 신축 건축물 성능 강화로 탄소중립 실현

대구시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7월 수립한 '제2차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제시한 설계기준 강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녹색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건축 유관 단체(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대구·경북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회 등)와 긴밀히 소통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을 50층 이상 건축물까지 추가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적용 범위 또한 기존 개정안에서는 배제된 '다' 등급(주거용의 경우 30세대 이상, 비주거용의 경우, 연면적 합계 3,000m² 이상)의 건축물까지 포함하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에 따른 재산세 또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는 강화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최고 등급인 플러스 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20%의 경감률을, 이하 5등급까지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고시하였다.